

춘천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0나54484(본소), 2020나54491(반소) 판결 [공사대금등 지급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0나54484(본소), 2020나54491(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11 선고 2017가단86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영농조합법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9. 11. 선고 2017가단864(본소),
2018가단262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6,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23. 3.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3,15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당초 반소 청구원인으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3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20. 8.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9.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은 2013. 8.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과 귀농귀촌을 위한 머쉬타운을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귀농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는 G이 모집한 귀농인 5인(J, K, F, L, 피고) 중 1인이다.

라. 황성균은 2013.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G은 위 5인을 대리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황성균은 2013. 8. 9. 위 5인에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경 위 5인 중 중 피고를 제외한 4인과 주택 1동과 버섯재배사 2동을 공사대금 약 1억 5,97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는 피고가 주택을 직접 짓겠다고 하여, 주택부지 기초공사와 버섯재배사 2동만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9,5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4. 8. 30.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 22, 23, 25, 26, 29 내지 34, 37, 38, 40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버섯재배사 2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의 공사비를 1억 5,97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1121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그 대금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한 후 여기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더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산도급의 방식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1억 5,97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를 제외한 4인과는 버섯재배사 2동과 주택 1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약 1억 5,970만 원 정도였다. 버섯재배사 2동과 주택 1동의 도급금액이 1억 5,970만 원인데, 버섯재배사 2동만을 짓는 공사대금이 1억 5,97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4. 4. 1. F과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갑 제38호증의 2)에는 버섯재배사 2동과 주택 1동에 대한 공사대금이 159,699,99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갑 제40호증)에는 주택 1동에 대한 공사대금이 9,25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의 2018. 1. 23.자 증거설명서 참조).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버섯재배사 2동에 대한 공사대금은 약 6,718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③ 피고와 J가 2014. 4. 15. 원고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버섯재배사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와 J가 작성해 G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사비 내역서(을 제2호증)에는 평당 공사금액이 7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평당 공사금액을 800,000원으로 증액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원고는, 횡성군공문(갑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버섯재배사 신축비용이 1억 5,970만 원인 점, 2014. 8. 1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를 발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1억 5,9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버섯재배사 신축비용은 피고가 버섯재배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약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공사대금의 산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도급의 방식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공사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105,686,205원이다(공사비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

순 번	공사 내용	공사대금(단위: 원)
1	가설공사	3,201,982
2	토공사	2,295,842
3	철근콘크리트	10,008,727
4	판넬공사	45,560,222
5	금속공사	24,601,861
6	창호공사	8,725,137
7	기타공사	11,292,434
합계		105,686,205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비 105,686,205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5,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0,486,205원(= 105,686,205원 - 9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3. 7. 10.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8. 12. 500만 원, ② 2014. 8. 15. 200만 원, ③ 2014. 8. 20.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① 2013. 7. 10. 300만 원, ② 2013. 7. 26. 100만 원, ③ 2014. 3. 3. 600만 원, ④ 2014. 7. 16. 200만 원도 공사대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4.경인데 2013.경 지급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2014. 3. 3.과 2014. 7. 16.에 지급한 돈은 버섯재배사 공사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주택 부지에 대한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6,205원(= 10,486,205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버섯재배사 2동을 인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인 96,225,07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117,2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수령한 공사대금 20,974,9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명시적 일부청구로 그중 8,766,848원만을 구한다.
- 2) 원고가 시공한 버섯재배사 2동의 내·외부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1,233,152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233,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105,686,205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05,200,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과수령한 공사대금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버섯재배사 2동의 내·외부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 이와 같은 균열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1,233,1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버섯재배사 2동의 내·외부 바닥에서 발생한 하자(균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1,233,15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 날에 해당하는 피고의 2022. 12. 29.자 준비서면 부분(피고는 2022. 12. 29.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보라, 판사 고병용

별지